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호

*논문접수 : 2025. 10. 20. *심사개시 : 2025. 10. 22. *게재확정 : 2025. 11. 10.

〈목 차〉

I. 서론	2.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
II.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3. 강점
1. 의의	4. 보완할 점(단점)
2.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	5. 가입시 고려할 사항
3. 이 협약의 검토	6. 도전적 과제(우리 법제와의 정합성)
III.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IV. 결론
1. 의의	참고문헌

I. 서론

국제소송법상 국제협약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협약」(이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또는 ‘재판관할합의협약’)¹⁾과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²⁾ (이하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또는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내 도입 여부다.

* 이 논문은 이규호,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선 및 확대방안 -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협약을 중심으로 -』, 연구 보고서 2021-14, 법원행정처, 2021, 515-638면을 발췌하여 대폭 수정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 The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HCCH 2005 Choice of Court Convention).

2)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CCH 2019 Judgments Convention).

2025년 3월 13일 현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가입국 내지 서명국은 38개국이다. 이에에는 유럽연합,³⁾ 프랑스,⁴⁾ 독일,⁵⁾ 영국,⁶⁾ 중국,⁷⁾ 이스라엘,⁸⁾ 싱가포르,⁹⁾ 스페인,¹⁰⁾ 우크라이나,¹¹⁾ 미국¹²⁾ 등이 있다.

국경을 넘는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적 요소가 관련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도전적인 과제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법률과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부여된 구제책이 다른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승인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¹³⁾ 이는 종종 당사자에게 고액의 법률자문료와 추가적 위험을 수반하게 하여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의 흐름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공통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¹⁴⁾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협약¹⁵⁾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요건은 물론이고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초국경적 민사 또는 상사 사건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국의 당사자에게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¹⁶⁾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은 2025년 5월 13일 현재 33개국이 가입해 있다. 본 협약의

3) 유럽연합은 2009년 4월 1일 서명하였고, 유럽연합은 이 협약을 2015년 6월 11일 승인하였다. 이 협약은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4)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의 승인을 통해 이 협약이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5)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승인을 통해 이 협약이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6) 브렉시트 이전에는 2015년 10월 1일 이 협약이 영국에 발효되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영국이 이 협약에 2020년 9월 28일 가입하였다.

7) 중국은 이 협약에 2017년 9월 12일 서명하였다.

8) 이스라엘은 이 협약에 2021년 3월 3일 서명하였다.

9) 싱가포르는 2015년 3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6년 6월 2일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은 싱가포르에 201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10) 유럽연합의 승인을 통해 이 협약이 스페인에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11)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2016년 3월 21일 가입하였고 2023년 4월 28일 비준하였다. 그래서 이 협약은 우크라이나에서 2023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12) 미국은 이 협약에 2009년 1월 19일 서명하였다.

13) HCCH, Outline of HCCH 2019 Judgments Convention, available at <https://assets.hcch.net/docs/36b240ac-8228-481d-a33b-3716baf4c656.pdf> (last visit on October 15, 2025).

14) Id.

15)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가입국(내지 서명국)으로는 유럽연합,¹⁷⁾ 독일,¹⁸⁾ 프랑스,¹⁹⁾ 이태리,²⁰⁾ 러시아,²¹⁾ 스페인,²²⁾ 우크라이나,²³⁾ 영국,²⁴⁾ 미국²⁵⁾ 등이 있다. 2025년 5월 13일 현재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과 관련하여 아시아국가로는 이스라엘²⁶⁾이 유일하게 이 협약에 서명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아래에서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i) 채택현황, (ii)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iii) 가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고찰한다. 이 두 협약의 비준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나라가 국제거래분쟁과 관련하여 주요한 축을 이룰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II.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²⁷⁾²⁸⁾

1. 의의

국제적인 사건에서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하여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하는 국제협약이다.²⁹⁾ 이 협약은 민사사건 또는 상사사건에게 체결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적용된

16) HCCH, Outline of HCCH 2019 Judgments Convention, available at

<<https://assets.hcch.net/docs/36b240ac-8228-481d-a33b-3716baf4c656.pdf>> (last visit on October 15, 2025).

17) 유럽연합은 이 협약에 2022년 8월 29일에 가입하였고, 본 협약이 유럽연합에서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18) 독일은 이 협약에 2022년 8월 29일에 가입하였고, 본 협약이 유럽연합에서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19) 프랑스는 이 협약에 2022년 8월 29일에 가입하였고, 본 협약이 유럽연합에서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20) 이태리는 이 협약에 2022년 8월 29일에 가입하였고, 본 협약이 유럽연합에서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21) 러시아는 이 협약에 2021년 11월 17일에 서명하였다. 2025년 5월 13일 이 협약이 러시아에서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22) 스페인은 이 협약에 2022년 8월 29일 가입하였고, 이 협약은 2023년 9월 1일 스페인에서 발효되었다.

23)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2020년 3월 4일 가입하였고, 2022년 8월 29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우크라이나에서 2023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24) 영국은 이 협약에 2024년 1월 12일 서명하였고 2024년 6월 27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영국에서 2025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25) 미국은 이 협약에 2022년 3월 2일 서명하였다.

26) 이스라엘은 이 협약에 2021년 3월 3일 서명하였다.

27) 이 협약은 2005년 6월 30일 채택되었다.

28)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제11권, 박영사, 2005. 12., 369면 이하; 김효정/장지용/김성화/서용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6, 242-264면.

29)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1조 제1항.

다.³⁰⁾ 당초 민사 및 상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아우르는 협약을 제정하고자 하였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노력은 회원국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로 인하여 좌절되고 결국 협약은 ‘전속적 재판관할합의’만을 규율하게 되었다.³¹⁾

2.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

우리나라가 미체결한 헤이그 협약의 경우에는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에 따라서는 체약국간 헤이그 협약으로는 불완전한 국제사법공조가 되는 바,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는 체약국 상호간의 쟁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제21조	덴마크	선언	선언 (2018. 5. 30.) 2005년 6월 30일자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1조에 따라 이 협약 가입시 덴마크왕국의 선언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특정유형의 보험계약을 제외하는 선언의 목적은 유럽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덴마크 왕국은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아래 2)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다. 2) 덴마크 왕국은 이 협약을 다음의 경우에 적용할 것이다. a) 계약이 재보험계약인 경우 b) 재판관할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는 경우 c)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동일한 체약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거소를 두고 있고 손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체약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그 체약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	

30)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1조.

31) 본 협약의 성안 과정에 관한 상세는, 석광현,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11호, 2005. 12., 192-193면; 김효정,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시의 실익과 고려사항,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9. 6., 169-170면.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d) 관할합의가 큰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i) 영리적 목적 a) 해상 선박, 연안 또는 공해 또는 강에 위치한 시설,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 c) 철도차량 ii)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이동중인 물품이나 승객의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iii) 아래 운송수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a) 선박, i)a)의 해상선박, 시설 또는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이 그러한 위험을 가진 보험에 관한 관할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c) 철도차량 iv) ii)에 언급된 이동중 물품이나 화물로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v) i)에서 언급된 해상 선박, 시설, 운하 내지 호수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의 사용 또는 운항에 관련된 금전적 손실 vi) i) 내지 v)에 언급된 위험에 관련된 위험 또는 이해관계 vii) 보험계약자가 전문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 위기가 그러한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용위기 또는 보증위기 viii)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영업에 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 a) 대차대조표상 총 6백2십만 유로 b) 1천2백8십만 유로의 순거래액 c) 회계연도상 평균 250명의 종업원 2005년 6월 30일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시 덴마크 왕국의 일방적 선언 덴마크 왕국은 다음의 일방적 선언을 한다. 덴마크 왕국은 이 협약의 적용시 얻게 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 향후 이 협약 제 21조에 따른 선언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추가) 이 협약은 파로 제도(Foroe Islands)와 그린란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유럽연합	선언	2015. 6. 11.자 선언 “이 협약의 적용범위에서 특정유형의 보험계약을 제외하는 선언의 목적은 유럽 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는 특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유럽연합은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아래 2.에 따라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다. 2. 유럽연합은 이 협약을 다음의 경우에 적용할 것이다. (a) 계약이 재보험계약인 경우 (b) 재판관할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는 경우 (c)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동일한 체약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거소를 두고 있고 손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체약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그 체약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 (d) 관할합의가 큰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i) 영리적 목적 (a) 해상 선박, 연안 또는 공해 또는 강에 위치한 시설,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 (c) 철도차량 (ii)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이동중인 물품이나 승객의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iii) 아래 운송수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a) 선박, (i)(a)의 해상선박, 시설 또는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이 그러한 위험을 가진 보험에 관한 관할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c) 철도차량 (iv) (ii)에 언급된 이동중 물품이나 화물로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v) (i)에서 언급된 해상 선박, 시설, 운하 내지 호수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의 사용 또는 운항에 관련된 금전적 손실 (vi) (i) 내지 (v)에 언급된 위험에 관련된 위험 또는 이해관계 (vii) 보험계약자가 전문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 위기가 그러한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용위기 또는 보증위기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viii)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영업에 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 (a) 대차대조표상 총 6백2십만 유로 (b) 1천2백8십만 유로의 순거래액 (c) 회계연도상 평균 250명의 종업원 유럽연합은 다음의 일방적 선언을 한다. 유럽연합은 이 협약의 적용시 연계 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 향후 이 협약제21조에 따른 선언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영국	선언	2020. 9. 28. 영국 정부는 아래와 같이 아래의 선언을 하고 이 협약에 구속되는 것에 대하여 영국 (그레이트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및 지브롤터의 동의를 표한다. 영국은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아래 1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다. 1. 영국은 이 협약을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에 적용할 것이다. (a) 계약이 재보험계약인 경우 (b) 재판관할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는 경우 (c)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동일한 체약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거소를 두고 있고 손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체약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그 체약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 (d) 관할합의가 큰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i) 영리적 목적 (a) 해상 선박, 연안 또는 공해 또는 강에 위치한 시설,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 (c) 철도차량 (ii)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이동중인 물품이나 승객의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iii) 아래 운송수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a) 선박, (i)(a)의 해상선박, 시설 또는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이 그러한 위험을 가진 보험에 관한 관할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c) 철도차량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iv) (ii)에 언급된 이동중 물품이나 화물로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v) (i)에서 언급된 해상 선박, 시설, 운하 내지 호수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 차량의 사용 또는 운항에 관련된 금전적 손실 (vi) (i) 내지 (v)에 언급된 위험에 관련된 위험 또는 이해관계 (vii) 보험계약자가 전문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 위기가 그러한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용위기 또는 보증위기 (viii)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영업에 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 (a) 대차대조표상 총 6백2십만 유로 (b) 1천2백8십만 유로의 순거래액 (c) 회계연도상 평균 250명의 종업원 2. 영국은 다음의 일방적 선언을 한다. 영국은 이 협약의 적용시 얻게 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 향후 이 협약 제21조에 따른 선언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아래의 외교상 구상서와 함께 “영국 대사관은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 찬사를 보내고 영국이 2005. 6. 30자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을 하고자 오늘 기탁한 가입문서를 송부할 영예를 가진다.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30조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이 2015. 10. 1자로 이 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격으로 2015. 10. 1자 이 협약에 구속되고 되었다. 유럽연합과 유럽핵에너지공동체로부터 영국이 탈퇴하는 조약(탈퇴조약)은 2020. 2. 1. 발효되었다. 이 탈퇴조약은 2020. 2.1.부터 2020. 12. 31.까지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탈퇴조약에 따라 경과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법제는 영국에 계속 적용될 것이고 영국은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채택한 국제조약의 취지상 회원국으로 취급된다.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계속된 적용 의향과 함께 영국은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7조 제4항에 따라 가입문서를 제출하였다. 2021년 1월 1일 0시 정각(중앙유럽 표준시 기준)에 가입문서가 발효된다는 인식하면서 영국은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 2015. 10. 1.에 영국에 발효되었고 영국이 그 날 이후 아무런 간섭 없이 체약국이라고 본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영국대사관은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 협약에 대한 가입이 지브롤터에도 효력이 생기고 이 협약에 대한 선언도 지브롤터에 미친다는 선언을 2019. 7. 31. 기탁한 문서를 송부하는 영예를 추가로 가진다. 영국은 지브롤터에 관한 이 협약의 가입 및 그에 수반하는 선언이 2020. 1. 31자 영국이 기탁한 문서의 시행에 의하여 철회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영국은 이 협약에 대해 새로 가입하는 것은 지브롤터에도 적용되고 현재의 가입문서에 수반하는 선언들도 지브롤터에 적용된다. 영국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브롤터에 관한 추가적인 선언을 하고자 한다. 영국대사관은 최선을 다해 새로 가입할 장을 가지겠다는 점을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게 보증한다. 2020. 1. 31. 영국대사관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찬사를 보내며 영국의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가입에 관하여 2018. 12. 28자 외교상 구상서와 함께 기탁한 가입문서와 2019. 3. 28, 2019. 4. 12 및 2019. 10. 30에 기탁한 선언을 송부할 영예를 가진다. 가입문서 기탁 이래 영국과 유럽연합은 2020. 2. 1. 발효될 예정인 탈퇴조약을 서명, 비준 및 승인하였다. 이 탈퇴조약은 그 조약이 발효되는 날짜로부터 개시하여 2020. 12. 31. 종료되는 경과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 탈퇴조약에 따라 경과기간 동안 이 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법제는 계속해서 영국에 적용될 것이다. 외교상 구상서 및 선언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영국정부는 가입문서, 외교상 구상서 및 선언의 철회를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영국은 영국에서 이 협약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영국은 경과기간의 종료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가입문서를 기탁하고자 한다. 영국대사관은 최선을 다해 새롭게 가입할 장을 가질 것을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 보증한다. 2019. 4. 12. 영국 대사관은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 찬사를 보내고 영국의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에 관하여 2018. 12. 28. 기탁한 가입문서 및 2019. 3. 28. 기탁한 외교상 구상서를 송부할 영예를 가지고 영국의 이 협약 가입에 관하여 아래의 선언을 하길 원한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외교상 구상서 기탁 이래 영국과의 합의와 관련하여 내린 2019. 4. 11.자 유럽 이사회 의결에서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 제3항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기간을 2019. 10. 31.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연장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회원국으로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법제는 영국에도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이 협약에 대한 영국의 가입이 유럽 이사회 의결에 따라 2019. 11. 1.까지 유예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할 영예를 가진다. 외교상 구상서에서 언급한 대로 탈퇴조약이 영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서명, 비준 및 승인되는 경우에 영국은 2018. 12. 28에 기탁한 가입문서를 철회할 것이다. 영국대사관은 최선을 다해 새롭게 가입할 장을 가질 것을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 보증한다. 2019. 3. 28. 가입문서와 외교상 구상서의 기탁 이래 유럽이사회와 영국은 유럽연합 조약 제 50조 제3항에 따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탈퇴기한 연장시기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회원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법제는 영국에도 적용될 것이다. 탈퇴기한 연장의 기간은 영국 의회가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탈퇴조약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019. 3. 22자 유럽 이사회의 의결에서 유럽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탈퇴조약이 늦어도 2019. 3. 29까지 영국 하원에서 승인되는 경우에 유럽연합 조약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2019. 5. 22까지 연장된다. 탈퇴조약이 영국 하원에서 늦어도 2019. 3. 29까지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조약 제5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2019. 4. 12까지 연장된다. 그 경우에 영국은 2019. 4. 12이전에 유럽 이사회가 고려할 방법을 미리 알려줄 것이다.” 영국정부는 영국의 이 협약 적용의 지속적 원활한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기간의 연장기한에 비추어 보아 외교상 구상서에서 언급한 대로 유럽이사회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2019. 4. 13까지 또는 2019. 5. 23까지 영국정부는 2019. 4. 1.로부터 이 협약에 대한 영국의 가입일을 유예할 것을 선언한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2018. 12. 28. 영국은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아래 1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선언한다. 1. 영국은 이 협약을 다음의 경우에 보험계약에 적용할 것이다. (a) 계약이 재보험계약인 경우 (b) 재판관할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는 경우 (c)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동일한 체약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거소를 두고 있고 손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체약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그 체약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 (d) 관할합의가 큰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i) 영리적 목적 (a) 해상 선박, 연안 또는 공해 또는 강에 위치한 시설,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 (c) 철도차량 (ii)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이동중인 물품이나 승객의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iii) 아래 운송수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a) 선박, (i)(a)의 해상선박, 시설 또는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b)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이 그러한 위험을 가진 보험에 관한 관할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c) 철도차량 (iv) (ii)에 언급된 이동중 물품이나 화물로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v) (i)에서 언급된 해상 선박, 시설, 운하 내지 호수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의 사용 또는 운항에 관련된 금전적 손실 (vi) (i) 내지 (v)에 언급된 위험에 관련된 위험 또는 이해관계 (vii) 보험계약자가 전문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 위기가 그러한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용위기 또는 보증위기 (viii)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영업에 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 (a) 대차대조표상 총 6백2십만 유로 (b) 1천2백8십만 유로의 순거래액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c) 회계연도상 평균 250명의 종업원 2. 영국은 다음의 일방적 선언을 한다. 영국은 이 협약의 적용시 얻게 되는 경험에 비추어 보아 향후 이 협약 제21조에 따른 선언을 유지할 필요성을 재평가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아래의 외교상 구상서와 함께 “영국 대사관은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 찬사를 보내고 영국이 2005. 6. 30자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을 하고자 오늘 기탁한 가입문서를 송부할 영예를 가진다.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9조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을 대표하여 이 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격으로 이 협약에 구속 되게 되었다.” 영국과 유럽이사회는 유럽연합과 유럽핵에너지공동체로부터 영국이 탈퇴하는 조약(탈퇴조약)의 내용에 대하여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당사국의 서명, 비준 및 승인을 받으면 이 탈퇴조약은 2019. 3. 30. 발효될 것이다. 이 탈퇴조약은 2019. 3. 30.부터 2020. 12. 31.까지 또는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한 추후의 날짜까지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탈퇴조약에 따라 경과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법제는 영국에 계속 적용될 것이고 영국은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이 채택한 국제조약의 취지상 회원국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탈퇴조약이 영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비준 및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이 중지되는 시점으로부터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적용의 지속을 보장하길 원한다. 따라서 영국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만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7조 제4항에 따른 가입문서를 제출하였다. 가입문서는 영국이 2019. 4. 1이래 발효되는 자국의 권리 하에서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선언한다. 탈퇴조약이 영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서명, 비준 및 승인되고 2019. 3. 30. 발효되는 경우에는 영국은 오늘 기탁한 가입문서를 철회할 것이다. 그 경우에 전술한 탈퇴조약에서 규정하는 경과규정의 기간 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취급될 것이고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 계속해서 시행될 것이다. 네덜란드 왕국 주재 영국대사관은 최선을 다해 새롭게 그 협약에 가입할 의향을 있음을 네덜란드 왕국 외교부에게 보증한다.	
	몰도바 공화국	선언	2024년 3월 14일 1. 몰도바 공화국은 협약 제21조에 따라, 아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 계약에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2. 몰도바 공화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에 본 협약을 적용한다: 1. 계약이 재보험계약인 경우 2. 재판관할합의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되는 경우 3. 이 협약 제1조 제2항에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동일한 체약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거소를 두고 있고 손해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계약이 그 체약국의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이 그 체약국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는 경우 4. 관할합의가 큰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위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것인 경우 a) 영리적 목적 - 해상 선박, 연안 또는 공해 또는 강에 위치한 시설,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 항공기 - 철도차량 b)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이동중인 물품이나 승객의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 c) 아래 운송수단의 사용 또는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 선박, a)의 해상선박, 시설 또는 운하 및 호수에서 운항하는 선박 -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체약국의 법이 그러한 위험을 가진 보험에 관한 관할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항공기 - 철도차량 d) b)에 언급된 이동중 물품이나 화물로 초래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서 승객에 대한 신체적 손해책임이나 화물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책임 이외의 책임 e) a)에서 언급된 해상 선박, 시설, 군함, 항공기 또는 철도차량철도차량의 사용 또는 운항에 관련된 금전적 손실 f) a) 내지 e)에 언급된 위험에 관련된 위험 또는 이해관계 g) 보험계약자가 전문적으로 산업적 또는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그 위기가 그러한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신용위기 또는 보증위기 h) 보험계약자가 다음의 기준 중 둘 이상의 한도를 초과하는 규모의 영업에 하는 경우 그 밖의 위험 - 대차대조표상 총 6백2십만 유로 - 1천2백8십만 유로의 순거래액 - 회계연도상 평균 250명의 종업원	
제22조	스위스	선언	2024년 9월 18일 제22조 제1항에 따라, 스위스는 제3조 c)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간에 체결된 관할합의계약에서 지정된 다른 체약국법원의 판결을 자국 법원이 승인하고 집행할 것임을 선언하며, 특정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관할합의법원(부가적관할합의계약)을 지정할 것을 선언한다.	
제30조	유럽연합	선언	유럽공동체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30조에 따라 이 협약이 규율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적격을 행사한다는 점을 선언한다.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은 이 협약을 서명, 비준, 가입 또는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고 유럽공동체가 내린 결론에 따라 이 협약에 구속된다. 이 선언의 취지상 ‘유럽공동체’란 용어는 유럽연합에 관한 협약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부속되어 있는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덴마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승계선언(유럽연합, 2020. 1. 29.) “2009. 12. 1.로부터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승계하였다(리스본조약에 의해 도입된 개정내용으로부터 초래된 대로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제1조 제3문). 그리고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였고 유럽공동체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였고 지속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존 권리를 행사하고 유럽연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2009. 12. 1. 이래로 네덜란드 외무부가 수탁처이고 2009. 12. 1. 이래 유럽연합에 의해 대체된 유럽공동체가 체약국인 모든 협약 및 조약에 관하여 유럽공동체가 유럽연합에 의해 대체되었고 승계되었다는 사실을 유럽연합의 네덜란드 상설대표처에게 통지하는 영예를 누린다.”	
기타	오스트리아	선언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벨기에	선언	벨기에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불가리아	선언	불가리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크로아티아	선언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키프로스	선언	키프로스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체코공화국	선언	체코공화국은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에스토니아	선언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핀란드	선언	핀란드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프랑스	선언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독일	선언	독일은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그리스	선언	그리스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헝가리	선언	헝가리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아일랜드	선언	아일랜드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이태리	선언	이태리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라트비아	선언	라트비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리투아니아	선언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룩셈부르크	선언	룩셈부르크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몰타	선언	몰타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네덜란드	선언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폴란드	선언	폴란드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포르투갈	선언	포르투갈은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루마니아	선언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슬로바키아	선언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슬로베니아	선언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스페인	선언	스페인은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스웨덴	선언	스웨덴은 유럽연합이 승인하는 경우에 본 협약에 구속된다.	
	영국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 수탁처로부터의 통지 2020. 1. 31. 영국의 이 협약 가입에 관한 2019. 1. 2.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1/2019와 영국의 이 협약 가입 중단에 관한 수탁처 통지 2019. 3. 29. 자 Choice of Court No. 03/2019, 2019. 4. 12.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4/2019, 2019. 10. 31.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7/2019를 인용하여 수탁처는 영국이 2020. 1. 31. 가입문서, 외교상 구상서(Note Verbale) 및 선언을 철회하였다는 점을 전달한다.	
			2019. 10. 30. 영국의 이 협약 가입 중단에 관한 2019. 3. 29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3/2019와 2019. 4. 12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4/2019를 인용하여 수탁처는 가입이 2020. 2. 1.까지 중단되었다는 점을 전달한다.	
			2019. 4. 12. 영국의 이 협약 가입중단에 관한 2019. 3. 29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3/2019를 인용하여 수탁처는 그 가입이 2019. 11. 1.까지 중단되었음을 전달한다.	
			2019. 3. 29. 영국의 이 협약 가입에 관한 2019. 1. 2자 수탁처 통지 Choice of Court No. 01/2019를 인용하여 수탁처는 2019. 4. 13 또는 2019. 5. 23까지 가입이 중단 된다는 점을 전달한다.	

3. 이 협약의 검토

가. 강점

이 협약 제3조 제b항에 따르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국의 하나 이상의 특정 법원을 지정하는 합의는 전속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³²⁾ 그 밖에 이 협약 제22조에 따르면, 계약국은 부가적인 관할합의(non-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에서 지정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³³⁾ 2024년 9월 18일 스위스가 그러한 선언을 하였다.

이 협약은 전속적 합의관할에 효력을 부여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 협약 제5조에서는 선택된 법원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협약 제6조에서는 선택되지 아니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심리하길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 협약 제8조 내지 제9조에서는 선택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계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완할 점(약점)

(1) 계약국 수의 규모

미국,³⁴⁾ 유럽연합,³⁵⁾ 중국,³⁶⁾ 싱가포르³⁷⁾ 등이 이 협약의 계약국이나 우리나라는 2025년 10월 20일 현재 이 협약의 계약국이 아닌 상태다. 2025년 3월 13일 현재 이 협약의 계약국은 38개국이다.³⁸⁾

32) Art. 3 of Hague Convention.

33) <https://assets.hcch.net/docs/89be0bce-36c7-4701-af9a-1f27be046125.pdf>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34) 미국은 2009년 1월 19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35) 유럽연합은 2009년 4월 1일 서명하였고 2015년 6월 11일 REIO가 이 협약을 승인하였고 각 회원국은 REIO에 의한 승인의 결과에 구속되게 되었다. 이 협약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2015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36) 중국은 2017년 9월 12일 서명한 상태이나 2025년 10월 20일 현재 아직 비준은 하지 않았다.

37) 싱가포르는 2015년 3월 25일 서명하였고 2016년 6월 2일 비준하였다. 이 협약이 싱가포르에서 2016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38)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98> (last visit on October 19, 2025).

(2) 적용범위

이 협약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계약, 근로계약 및 그 밖의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 있다. 다수의 경우 이러한 적용 배제의 이유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전속관할을 규정한 국제조약, 국내법, 지역적 규칙 또는 국제적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⁹⁾

다. 기회

(1) 의의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가 모두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체약국이라는 점과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분쟁해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선도적으로 비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로서 적시하여 본다.

한국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준한 것을 전제로 영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중립적인 법정지로서 싱가포르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체결한 경우를 가정하자. 영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용이하게 집행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영국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은 영국에서 용이하게 집행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현 상황을 전제로 영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중립적인 법정지로서 싱가포르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자. 영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우리 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될 것인데, 현 판례에 따르면 보다 까다롭게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영국 기업을 상대로 싱가포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39) 이규호, “관할합의에 기초한 訴訟留止命令(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9. 6., 54면.

(2) 비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적용할 가능성

본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⁴⁰⁾

(3) 확장성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⁴¹⁾

(4) 협약 가입시 선언을 할 것인지 여부

1) 관할을 제한하는 선언 여부(제19조)

2021년 3월 3일 현재 32개 체약국 중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19조의 선언을 한 체약국은 없다.⁴²⁾ 이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든지 선택된 법원의 관할을 제외하고는 그 국가와 당사자들 또는 분쟁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그 법원들은 전속적 관할합의가 적용되는 분쟁을 재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따른 선언을 하더라도 합리적 관련성의 요건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렵다.⁴³⁾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옵션을 취하는 경우에 대법원판결은 이 협약의 체약국 사이에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2) 승인 및 집행을 제한하는 선언 여부(제20조)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0조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든지 당사자들이 승인국에 거주하고 선택된 법원의 장소 이외에 당사자들의 관계와 분쟁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요소들이 승인국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그 법원들은 다른 체약국의 법원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

40) 김효정, 앞의 논문, 171면.

41) 위의 논문, 171면; Mukarrum Ahmed & Paul Beaumont,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s: Some Issues in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Brussels I Recast Especially Anti-Suit Injunctions, Concurrent Proceedings and the Implications of BREXIT", 13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86, 408 (2017).

42)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98>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43) 김효정, 앞의 논문, 203면.

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승인국의 순수한 국내사건에 대하여 외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⁴⁴⁾ 이 협약 제20조에 따른 선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3) 특정사항에 관한 선언 여부(제21조)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21조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가 협약을 ‘특정사항’에 적용하지 않는데 대하여 강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 그 국가는 협약을 그 사항에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특히 2021년 3월 3일 현재 32개 체약국 중 유럽연합, 덴마크, 영국 등 29개국이 이 협약 제21조에 따른 선언에 의해 보험계약에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이유는 브뤼셀 I bis에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보호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즉, 유럽연합 회원국이자 이 협약의 체약국들은 브뤼셀 I bis의 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 협약 제21조에 따라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적용배제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호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약 제21조에 따른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⁴⁷⁾

4) 비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상호적 선언 여부(제22조)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제3조), 이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따라 협약의 적용범위를 비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이 협약 제22조의 선언을 한 체약국으로는 스위스가 유일하다.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우리 법제상 소송유지명령의 활용가능성

(i) 우리 판례상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44) 석광현, 앞의 논문, 219면.

45) 위의 논문, 219면; 김효정, 앞의 논문, 205면.

46) 김효정, 앞의 논문, 206면.

47) 위의 논문, 206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⁴⁸⁾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⁴⁹⁾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은 (i) 해당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ii)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iii)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iv)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요건인 “해당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갑이 을로부터 홍콩 소재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의 상속인 병 등이 을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48) 김희동,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우리 국제재판관할합의 법제의 과제”,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31호, 2014. 1., 41-66면.

4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에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서, 을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 소재국 법원인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므로, 주위적 청구의 소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의 소는 병 등이 을을 상대로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는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가진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데도 대한민국 법원에 매매대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⁵⁰⁾

세 번째 요건인 “합리적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 하는 점에서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이 일본국의 도쿄지방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점은 이 사건 화물의 수출자(홍콩에 있는 한화 주식회사)가, 일본에 본점을 둔 운송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이 사건 신용장 개설은행인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수입자인 동해펄프 주식회사(이하 ‘동해펄프’라 한다)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이고, 운송의 목적지도 대한민국 울산항이어서 일본국 도쿄와는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국 도쿄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반드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판단하였는바, 여

50)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17874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

기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준거법이 일본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실시하여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합리적인 관련성을 갖지 못하고, 해당 사건의 준거법도 외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판례는 합리적 관련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이 미합중국 뉴욕주 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만한 점은, 피고가 뉴욕주에도 영업소(지점)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피고를 위하여 운송물 인도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운송물을 멸실시킨 보세창고업자가 미국인이고 그 운송물이 멸실된 곳이 미합중국의 텍사스 주라는 것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인데다가, 운송물의 목적지는 텍사스 주로서 뉴욕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미합중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송물의 가액이 극히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뉴욕주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⁵¹⁾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⁵²⁾는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⁵³⁾에 대응하여 국제재

5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손해배상(기)].

52) 제8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이하 이 조에서 “합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합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1.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에 따를 때 그 합의가 효력이 없는 경우
2. 합의를 한 당사자가 합의를 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3.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를 때 합의의 대상이 된 소가 합의로 정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제재판관할에 전속하는 경우
4.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 소가 계속(係屬)된 국가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

관할에 대한 합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⁵⁴⁾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합의의 독립성⁵⁵⁾을 국제재판관할합의에도 명시하였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거래 등에서 관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서면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는 점,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도 서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⁵⁶⁾ 한편,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의하여 유효요건을 갖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정된 법원의 국가의 법’ 및 ‘법정지법’ 모두에 의하여 유효요건을 갖추 필요가 있다는 견해⁵⁷⁾가 존

되는 경우

- ②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③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 ④ 합의가 당사자 간의 계약 조항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계약 중 다른 조항의 효력은 합의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
 3.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
 4.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53)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54) 참고 노태악,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원에 있어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반소관할”, 「국제사법연구」, 제18호, 2012, 95-96면; 반대 견해로는 김희동, 앞의 논문, 58면(“합의에 근거한 분쟁해결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분쟁유형에 상응하여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관할합의에 대하여 엄격하고 상세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 55)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 56) 이문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일반관할 및 유형별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6788호)]”,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 3월, 25면.

- 57) 법무부, 「국제사법 개정 방안 연구」, 2014, 186면.

제한한다.⁵⁸⁾ 그 밖에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하면 그 협약 규정도 참작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ii) 관할합의 위반시 소송유지명령 가능성

우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3항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정으로서 피고의 외국법원에 대한 제소의 금지 및 소송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의 발령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적극설⁵⁹⁾이 있다. 반면에 우리 법제상 외국에서의 소송 자체의 중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실체법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 법상 재판관할권이 없는 외국법원에서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권리는 없다고 한다.⁶⁰⁾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그 주요효과가 소송상 효과인 소송계약에 해당한다. 이를 사법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⁶¹⁾ 이 소송계약상 의무의 절차적 성격은 그 의무의 존재를 부정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의무, 신의성실의 의무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한국 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합의가 존재하거나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 재판관할권이 배제된 국가가 그 계약상 재판관할권의 배제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선택조항에 기한 외국에서 제소하지 않을 의무가 성립한다.⁶²⁾ 이 경

58) 이문한, 앞의 검토보고서, 26면.

59) 김동진,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에 있어 영미법상의 소송금지명령(Anti Suit Injunction)에 대한 검토,” 「해상·보험연구」, 제4호 (2004. 3.), 112면; 정해덕, “미국해사소송에 있어서의 대한민국법상의 소멸시효와 소송중지명령,”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2009. 11.), 86면도 우리나라 법원도 가처분의 방법으로 외국소송에 대한 소송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근거로 소송유지명령을 발부하고 있다(리우펑(LIU PENG, 刘蓬)·축취영(Zhu Cui Ying, 祝翠瑛), 중국 표준필수특허(SEP) 소송에서의 소송금지명령, Legal Times, 2022.5.10,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28>>(최종방문일: 2025. 10. 20.)).

60) 김용진, 「국제민사소송전략-국제소송실무 가이드-(1997)」, 신영사, 162면.

61) Peter Gottwald, Internationale Gerichtsstandsvereinbarungen, in Festschrift für Henckel 295, 306-07 (1995)

62) Jürgen Kürth, Inländischer Rechtsschutz Gegen Verfahren vor Ausländischen Gerichten 63 (1988)(이하 “Kürth, Inländischer”)

우 당사자가 한국 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한 합의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은 해외에서 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가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⁶³⁾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때에 우리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국제소송 경합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⁶⁴⁾

우리나라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합의를 위반하여 외국 당사자가 외국에서 소를 제기할 때, 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소송계약이므로 이 계약 위반으로 실체법상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소송계약에 해당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법계약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과 이 소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의 외국법원에의 제소를 막을 수 없어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이상이 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발전적 소송계약설에 입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학설의 취지를 좇은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립요건을 갖춘 그 합의의 위반행위는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⁵⁾ 그런데, 외국법원에의 제소 내지 소송계속에 대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

63) Kürth, Inländischer, at 68-70; Wolfgang Jakob Hau, Positive Kompetenzkonflikte im Internationalen Zivilprozeßrecht 126-27 (1996) (이하 “Hau, Positive Kompetenzkonflikte”); Jochen Schröder, The Right not to be sued Abroad, in Festschrift für Kegel 523, 531, 539 (1987); Dieter Jasper, Forum Shopping in England und Deutschland 126-27 (1990).

64)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제1항에서는 “①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65) 독일법제하에서 관할합의에 기하여 해외에서 제소하지 아니할 의무는 (i) 그 합의가 독일법원에만 전속관할을 부여하고 다른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그 재판관할권을 박탈하거나 (ii) 계약상 재판관할권이 배제된 국가가 그 계약상 배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존재한다(Kürth, Inländischer, at 63). 또한, 당사자 일방이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 소송절차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와 비용을 회복할 수 있다. 그 소의 제기 또는 계속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See Peter Schlosser, Der Justizkonflikt zwischen USA und Europa 530 (1985); see also Richard Zöller & Reinhold Geimer, Internationales Zivilprozeßrecht P 1718 (2d ed. 1993)).

하기 어렵고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⁶⁶⁾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원에의 제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i)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성립요건을 갖춘 그 합의의 위반행위는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 (ii) 외국법원에의 제소 내지 소송계속에 대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및 (iii)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체화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금지청구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⁶⁷⁾ 이러한 발전적 소송계약설에 입각하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입각한 제소금지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발생하므로 절차적으로도 외국에서 제소당하지 않을 법적 지위를 보전받기 위해서 우리 법원이 외국에서의 제소를 금하는 소송유지명령의 형태를 띤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 전속적 국제재판관

66)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제6판, 진원사, 2025년, 6-7면 [“우리나라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은 불법행위로 입게 된 물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본으로 하고 장래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금지청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업자 사이에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만으로는 향후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인 구제책으로서 금지청구권을 허용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경쟁업자의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는 하나 이 판례의 법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포섭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경쟁업자 사이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가 적용될 여지는 줄어들게 되었다.”].

67) 우리 법제상 소송유지명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의 경우, 중재합의 위반의 경우, 그 밖의 경우 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소송유지명령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2016년 개정 중재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를 규정하여 제소금지를 명하는 임시적 처분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박진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개정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 2016년 11월 18일(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12면].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법원이 중재합의에 위반하여 외국법원에 제소하려는 자를 상대로 제소금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토대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재합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접근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합합의의 성립요건을 갖춘 그 합의의 위반행위는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할 것, (ii) 외국법원에의 제소 내지 소송계속에 대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및 (iii) 외국법원에의 제소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체화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형태의 소송유지명령도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⁶⁸⁾ 가치분적인 성격의 소송유지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치분적인 성격의 소송유지명령과 함께 그 명령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⁶⁹⁾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에서는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 의해 일단 법원이 소송유지명령을 내릴 권한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보다 강력한 조치로서의 실효성 있는 소송유지명령 형태의 보전처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모독에 대한 민사벌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i)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과 소송유지명령

당사자가 선택된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선택되지 않은 법원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한 이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브뤼셀 I bis 규칙⁷⁰⁾과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사이에 대비된다. 브뤼셀 I bis 규칙

68) 종래에 이에 대해 이규호 교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였으나, 한국국제사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4월 26일(금) 변호사교육문화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공동학술대회(대주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에서 이규호 교수가 발표한 ‘관할합의에 기초한 소송유지명령 (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이란 발표문에 대한 석광현 교수님, 장지용 판사님, 권창영 변호사님, 이창현 부장판사님의 토론을 청취한 다음, 본안소송을 염두에 둔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규호 교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구적 소송유지명령을 긍정하는 견해를 취하게 되었다.

69) 대법원 2007. 6. 14. 자 2006마910결정 참조.

70) Regulation (EU) No 121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12 on ju-

에서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선택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ruling)은 승인 및 집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¹⁾ 하지만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브뤼셀 I bis 규칙만큼 선택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을 보호하지 아니한다.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 지정된 체약국의 법원이 선고한 판결만이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된다. 따라서 선택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은 제한적인 상호신뢰 또는 부분적 상호신뢰를 존중하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서 승인 및 집행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과 소송유지명령의 양립가능성을 손쉽게 설명해준다. 하지만 상호신뢰원칙을 최우선시하는 브뤼셀 I bis 규칙을 대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⁷²⁾

라. 도전(위협요소): 국내 판례와의 정합성 문제

본 협약은 ①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로 추정하는 점, ②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될 것을 요하지 않고 서면으로 작성되면 충분하다고 보는 점, ③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으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합의관할법원과 당해 사건과의 합리적인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④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을 ‘선택된 국가의 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⁷³⁾

(1)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형 결정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제8조 제3항에서 “합의로 정해진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3조 제b호와 궤를 같이 한다.

(2)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은 “합의는 서면[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

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recast).

71) See C-456/11 Gothaer Allgemeine Versicherung AG v Samskip GmbH EU:C:2012:719, [2013] QB 548.

72) <http://conflictoflaws.net/2017/i-thought-we-were-exclusive-some-issues-with-the-hague-convention-on-choice-of-court-brussels-ia-and-brexit/> (last visit on October 15, 2025).

73) 김효정, 앞의 논문, 211면.

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電子的) 의사표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제c호에 따르면, 전속적 관할합의는 i) 서면 또는 ii) 추후 참조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체결되거나 작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2항은 이 협약 제3조 제c호와 궤를 같이 한다.

(3)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요건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외국법원을 선택하는 전속적 합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소가 제기된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해당 소를 각하하여야 하나, 합의가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제1호), 제9조에 따라 변론관할이 발생하는 경우(제2호),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경우(제3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제4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6조에 따르면 선택된 법원의 국가 이외의 계약국의 모든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속적 관할합의가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나, ① 선택된 법원의 국가의 법에 따라 관할합의가 무효인 경우(a호), ② 소가 계속한 법원의 국가의 법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할 능력이 없는 경우(b호), ③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명백한 부정의에 이르게 되거나 또는 소가 계속한 법원의 국가의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c호), ④ 예외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 합의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d호), ⑤ 선택된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e호)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를 중지·각하할 의무가 없다.

(4)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관할합의의 유효성의 준거법을 ‘합의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가지는 국가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제5항 제1호).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선택된 법원의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6조 a호, 제9조 a호). 따라서 2022년 개정 국제사법과 이 협약은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5)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기초한 재판의 승인·집행

우리 민사소송법은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요건을 열거하는 반면 협약은 승인거부사유를 소극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6) 손해배상에 관한 재판의 승인·집행의 문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비전보적 손해배상(non-compensatory damages)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협약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그 재판이 당사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실제로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는 것

이 아닌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거부될 수 있다. 협약 제11조 제1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비전보적 배상의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 및 협약 제11조 제1항은 징벌적 배상 등 비전보적 배상의 승인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2항 및 협약 제11조 제2항은 거의 동일하다.⁷⁴⁾

(7) 싱가포르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과 아태지역에서의 영향

싱가포르는 2016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체약국이 되었고 2016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관한 법률(Choice of Court Agreements Act 2016)을 통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이행하였다. 최근 싱가포르는 아태지역에서 분쟁해결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2015년에 싱가포르는 국제상사법원(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을 새로 설립하였다. 이 국제상사법원은 보다 유연한 증거수집 관련 규칙, 외국 변호사와 해외 법관을 유치할 가능성 및 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는 보다 간편한 절차 등 국제분쟁을 유치하고자 하는 다수의 혁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가 2016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하는 것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

74) 김효정, 앞의 논문, 202면.

의에 기초한 싱가포르의 판결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보다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목적 중 하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직접적 효력과 간접적 효력을 규율하는 규칙에 있어 보다 큰 확실성과 통일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송과 중재 사이의 경기장을 공평하게 하여 계약국 국내법원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계약국이 적은 관계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뉴욕 협약과 같은 정도의 광범위한 효력을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걸릴 것이다. 중재 보다 소송을 장려하는 것이 실제로 긍정적인 발전인지 여부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효력 중 하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라 계약국의 법원을 합의하도록 제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 하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기초한 판결이 보다 강력할 것이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력은 계약국 사이에 대칭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비계약국 국민인 경우에는 직관에 반하는 비대칭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일 회사가 중립적인 법정지로 싱가포르 법원에만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우리나라 회사와 체결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우리나라 회사가 싱가포르 법원에서 독일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독일 회사의 재산이 소재하는 독일에서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취득하였다. 이 경우 한국 회사는 이러한 합의를 잘한 선택으로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독일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해당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한국법에 따라서만 집행이 가능한 판결을 취득하였다. 한국 회사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 아니라 한국법에 따라 보다 많은 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싱가포르는 비계약국의 당사자에게 적절한 법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준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 기업이 해당 한국 기업과 중립적인 법정지로서 싱가포르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체결하고자 한다. 이 맥락에서 한국기업이 그러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승낙하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헤이

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용이하게 집행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은 중국에서 용이하게 집행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중국은 아직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서명만 하였고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체약국인 싱가포르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한국이 체약국인 것을 전제로 하면 비체약국의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준한 것을 전제로 영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중립적인 법정지로서 싱가포르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는 가정을 들어 보자. 영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용이하게 집행될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영국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판결은 영국에서 용이하게 집행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이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현 상황을 전제로 영국의 한 기업이 한국 기업과 중립적인 법정지로서 싱가포르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를 체결하고자 하는 가정을 들어 보자. 영국 기업이 싱가포르 법원에서 한국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우리 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될 것인데, 현 판례에 따르면 보다 까다롭게 처리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영국 기업을 상대로 싱가포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따라 용이하게 승인 및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이한 법원 내지 중재판정부의 특징, 판결의 집행가능성 뿐만 아니라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 객체인 재산의 소재지 등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정리

전술한 바와 같이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비대칭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면 가입 시 유보선언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체약국 간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소송유지명령의 발령기준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유지명령은 관할합의의 실효성을 보장하므로 브렉시트 이후 브뤼셀 I bis 규칙에 따른 보호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송유지명령이 의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가 고려되고 있다. *Turner v. Grovit* 사건⁷⁵⁾에서 소송유지명령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판관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유럽사법재판소는 소송유지명령을 상호신뢰원칙(Principle of mutual trust)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⁷⁶⁾ 그런데 브렉시트한 현 상황에서 영국은 상호신뢰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소송유지명령을 자유롭게 내릴 것이다.⁷⁷⁾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은 유럽연합 체계 밖에서 체결된 국제조약이어서 브렉시트한 현 상황에서 관할합의를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 대안으로 작동한다.⁷⁸⁾ 이 협약은 국제 민상사 사건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적용된다.⁷⁹⁾ 이 협약 제5조에 따르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서 선택한 법원이 그 법원에 있는 국가의 법에 따라 그 합의가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분쟁사건에 대해 판단할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협약 제6조에 따르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따르는 경우 선택되지 않은 법원은 그 소송을 중지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75) *Turner v Grovit*, Case C-159/02 [2004] ECR I-3565.

76) 참고로 브뤼셀 I 규칙 및 브뤼셀 I bis 규칙 제정 이전에도 영국 법원은 과거 브뤼셀협약의 회원국에 대하여 소송유지명령을 계속 활용해 왔다. 그 이유로서 브뤼셀협약이 소송유지명령을 그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침묵하였기 때문이다(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Sept. 27, 1968, 1978 O.J. (L 304) 36; Maura E. Wilson, Let Go of that Case-British Anti-Suit Injunctions against Brussels Convention Member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Issue 1, 212 (Spring 2003). 하지만 영국 법원의 소송유지명령의 활용은 브뤼셀협약의 전체 취지와는 저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Peter Stone, *Civil Jurisdiction and Judgments in Europe* 145 (1998)).

77) <https://blogs.kcl.ac.uk/kslreuropeanlawblog/?p=1264#.XLlGVuR7lPY> (최종방문일: 2025. 10. 20).

78) *Id.*

79)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1조 제1항.

III.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⁸⁰⁾⁸¹⁾

1. 의의

헤이그 재판협약은 제고된 사법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법원への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경을 넘는 법률관계와 분쟁해결에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그의 시행을 통하여 국제적인 거래, 투자와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⁸²⁾ 이 협약은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전 세계적 규범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⁸³⁾

2.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

<표 2>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제14조	코스타리카	선언	2021. 9. 16. 본 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코스타리카는 본 협약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제18조	안도라	선언	2025년 5월 13일 안도라는 제18조에 따라 본 협약이 안도라 공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비거주용 임대차(임차)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안도라는 제18조에 따라, 고용계약과 관련된 사안에서 근로자에 대한 판결의 승인 또는 집행에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한다.	

80) 이 협약은 2019년 7월 2일 채택되었다.

81) 김효정/장지용/김성화/서용성, 앞의 총서, 219-241면.

82) Francisco Garcimartín & Geneviève Saumier, Explanatory Report of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Text adopted by the Twenty-Second Session (2020), p. 48, para. 12, available at <https://assets.hcch.net/docs/a1b0b0fc-95b1-4544-935b-b842534a120f.pdf>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hereinafter “Garcimartín & Saumier, Explanatory Report”).

83)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20. 12, 5-6면 (이하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84)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notifications/?csid=1469&disp=resdn> (last visit on October 18, 2025).

협약 조문	체약국	유보/선언/ 통지/수탁처 와의 통신 중 유형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비 고
제25조, 제30조	영국	선언	2025년 3월 26일 2024년 6월 27일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한 데 이 어, 영국은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본 협약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도 적용될 것임을 선언한다. 2024년 6월 27일 영국은 제25조에 따라 본 협약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적용되며, 협약 제 30조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선언을 제출하거나 본 선언을 수정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	
기타 (제18조 포함)	유럽연합	선언	2022년 9월 29일 유럽연합은 본 협약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규율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함을 선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본 협약을 서명, 비 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아니하나, 유럽연합의 본 협약 가입에 따라 본 협약 에 구속된다. 본 선언의 목적상, '유럽연합'이라는 용어는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 조약에 부속된 덴마크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22호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덴마크 왕국을 포함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협약 제18조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 거주용 임대차(임차)에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⁸⁴⁾	
	우크라이나	선언	2023년 12월 1일 [상기 협약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완전히 이행되나, 러시아 연방에 의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연방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거나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해 당 지역에서는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 및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국경 불가침성에 대한 침해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우크 라이나 영토에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본 협약]에 따른 의무 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코스타리카가 제14조 제1항에 대한 적용배제선언을 하였다. 헤이그 재판협약 제14조 제1항은 “체약국들 중 한 국가에서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오로지 그가 외국 국적이거나 집행을 요청받은 국가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담보, 보증 또는 보증예치금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 및 국내 주소나 국내거소를 두지 않은 자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타리카는 이 조문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3. 강점

가. 전속적 관할합의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헤이그 재판협약은 그 목적과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과 유사하지만, 그 적용범위를 전속적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에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전속적 관할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적용범위보다는 넓다.⁸⁵⁾

나. 적용배제되는 사항이 선결문제인 경우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배제되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소송의 주된 목적 또는 주된 쟁점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항이 선결문제로 제기된 경우에는 그 재판은 헤이그 재판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한다.⁸⁶⁾

다. 정부 등이 당사자인 경우

정부, 정부기관 또는 국가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판이 재판협약의 적용범위로부터 제외되지는 아니한다.⁸⁷⁾

라. 확정재판에 한하지 아니한다.

헤이그 재판협약에 따르면, 재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재판만이 승인될 수 있고, 재판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재판만이 집행될 수 있다.⁸⁸⁾ 이와 관련하여 미확정재판도 승인 및 집행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판력의 유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⁸⁹⁾ 다만, 가압류재판과

85)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6면.

86)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2항.

87)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4항.

88) 헤이그 재판협약 제4조 제3항.

89)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23면.

가처분재판은 임시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므로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재판협약 제15조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⁹⁰⁾

4. 보완할 점(단점)

가. 단일협약

헤이그 재판협약은 1971년 민사 및 상사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이하 ‘1971년 헤이그 재판협약’)과 같이 직접관할을 규정하지 않는 단일협약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나. 적용배제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민사 내지 상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헤이그 재판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a) 자연인의 신분과 법적 능력, (b) 부양의무, (c) 부부재산제 및 혼인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 가족법상의 사건, (d) 유언과 상속, (e) 도산, 화의, 금융기관의 정리 및 유사 사건, (f) 여객 또는 물품의 운송, (g) 국경을 넘는 해상오염,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의 해상오염, 선박으로 인한 해상오염,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공동해손, (h) 원자력 (또는 핵) 손해에 대한 책임, (i) 법인 또는 자연인과 법인의 결합의 유효, 무효, 해산, 그 기관의 결정의 유효성, (j) 공부 기재의 유효성, (k) 명예훼손, (l) 프라이버시, (m) 지식재산권, (n) 공무수행 중 군대 구성원의 활동을 포함한 군대의 활동, (o) 법집행 활동, 공무수행 중인 법집행 구성원의 활동 포함, (p) 반독점 (경쟁) 사건, (q) 일방적 국가조치에 의한 국가채무 재조정에는 헤이그 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⁹¹⁾

2025년 6월 5일, Farm Syu Zhnyva 대 Gazprom International Limited 사건에서 헤이그 항소법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간 중 발생한 물질적 손해에 대해 러시아 에너지

90)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23면.

91)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10-12면.

대기업 가즈프롬에 연대 책임을 지운 우크라이나 판결에 대한 집행허가(exequatur)를 거부했다.⁹²⁾ 해당 법원은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⁹³⁾을 근거로 삼았으며, 이 협약은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한 양 당사국에 대해 2023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이 판결은 헤이그 협약 제2조 제5항을 핵심 근거로 삼았는데, 해당 조항은 “국가 자체 및 그 국유재산에 관한 특권과 면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법원은 러시아가 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행한 행위에 대해 국제법상 면책권을 누린다는 점을 근거로, 네덜란드 법원이 집행허가 절차를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다.⁹⁴⁾

또한 헤이그 재판협약은 중재 및 그와 관련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⁹⁵⁾ 이는 뉴욕협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⁹⁶⁾ 2025년 5월 13일 현재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이 가입한 국가의 대다수는 유럽연합국가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할 때, 아시아국가로서는 선도적으로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전에 아시아국가로서 한국이 루가노협약에 가입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취적인 국제화를 동참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의 가입은 국제절차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⁹⁷⁾

92) Farm Syu Zhnyva v Gazprom International Limited, C/09/674766 / HA RK 24-584, 5 June 2025, available at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publications1/?dtid=34&cid=137>>(last visit on October 19, 2025).

93) 유럽연합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우크라이나는 2022년 8월 29일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94) Pierfrancesco Rossi, Dutch Court Denies Exequatur of Ukrainian Judgment against Gazprom under the Hague Judgments Convention, EAPIL, 24 July 2025, available at <<https://eapil.org/2025/07/24/dutch-court-denies-exequatur-of-ukrainian-judgment-against-gazprom-under-the-hague-judgments-convention/>>(last visit on October 18, 2025).

95) 헤이그 재판협약 제2조 제3항.

96)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16면.

97) 불법행위관련 청구의 소에 있어 국제재판관할을 논함에 있어 2007년 10월 30일 개정된 루가노협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개정 루가노협약은 제70조 제1항 (c)에 의하여 동 협약 제72조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i) EFTA국가(동협약 제70조 제1항(a)) 및 유럽공동체회원국의 영토 일부에 해당하는 특정 비유럽지역 또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이 외교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비유럽지역을 대리하는 유럽공동체 회원국(동협약 제70조 제1항(b)) 이외의 국가도 가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루가노협약 미가입국의 경우에는 과잉관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루가노협약의 가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다만,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은 간접관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관할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규호, “不法行爲關聯 請求에 있어 國際裁判管轄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루가노협약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제57권 제6호 (통권 621호), 2008, 138-179면.

5. 가입시 고려할 사항

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는 헤이그 재판협약 제8조와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제11조를 참조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헤이그 재판협약 가입시 재판상 화해의 승인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국제사법에 통합하여 국제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⁸⁾

나. 제17조에 대한 선언

헤이그 재판협약 제17조에 따른 순수 국내사건에서 승인 및 집행을 제한하는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국내 기업 간 국내분쟁에 대해 과도하게 외국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⁹⁹⁾

6. 도전적 과제(우리 법제와의 정합성)

가.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상 관할규정과의 정합성

2022년 1월 4일 개정된 국제사법¹⁰⁰⁾상 국제재판관할규정과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헤이그 재판협약은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일 수 있는 관할근거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일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이 헤이그 재판협약의 간접관할보다 더 협소한 관할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¹⁰¹⁾ 그런데 개정 국제사법은 헤이그 재판협약의 간접관할근거보다 넓게 관할근거를 정하고 있으므로 헤이그 재판협약과의 정합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⁰²⁾

98)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69면.

99)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70면.

100)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0호, 2022. 1. 4. 전부개정].

101)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65면.

102)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65면.

나. 헤이그 재판협약상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국내법과의 정합성 문제

(1) 의의

국제소송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¹⁰³⁾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일 것이다.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에 대하여 협상함에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쟁점은 주된 장애물 중 하나다. 다시 말하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미국에서 선고된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집행을 허가할지 여부는 헤이그협약초안 (the proposed Hague Convention on the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을 성안함에 있어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다.¹⁰⁴⁾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2일 이 협약은 채택되었다. 이 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외국 법원의 판결이 억지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를 포함하여,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판결에 선고하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judgment may be refused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judgment awards damages, including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that do not compensate a party for actual loss or harm suffered.)”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협약 제10조 제2항에서는 “승인국 법원은 판결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소송절차에 관한 비용과 경비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The court addressed shall take into account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damages awarded by the court of origin serve to cover costs and expenses relating to the proceedings.)”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는 경우에 미국법원이 선고한 재판은 장래에 이 협약에 따라 집행될 것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판결 부분은 그 협약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¹⁰⁵⁾

우리 민사소송법상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으로서 (i)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

103)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19년 7월 2일 채택한 ‘민·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제2조 제1항 (m)호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식재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04) Louise Lussier, A Canadian Perspective, 24 Brook. J. Int'l L. 31, 69 (1998); John Y. Gotanda, Punitive Damages: A Comparative Analysis, 42 Colum. J. Transnat'l L. 391, 443 (2004).

105)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dopted 30 Oct., 1999, by the Special Commi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vailable at <http://www.hcch.net/e/conventions/draft36.e.html>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일 것, (ii)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질 것, (iii) 패소한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하고 적시에 소장의 송달을 받았거나 송달을 받지 않고 응소하였을 것, (iv) 외국판결의 승인이 공서위반이 아닐 것 및 (v)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들고 있다.¹⁰⁶⁾ 그리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¹⁰⁷⁾

헤이그 재판협약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과는 상이하다.

첫째, 헤이그 재판협약은 승인거부사유를 소극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승인을 위한 적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헤이그 재판협약은 확정재판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대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재판일 것을 요한다.

셋째, 헤이그 재판협약은 송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데 대하여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송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요구한다.

넷째, 헤이그 재판협약은 사기에 의하지 아니할 것, 승인국 재판과의 저촉, 승인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 제3국 선행재판과의 저촉 및 승인국 전소의 계속을 공서위반과의 별개의 승인거부사유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이를 모두 공서위반의 문제로 다룬다. 다섯째, 헤이그 재판협약은 상호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상호보증을 요구한다.¹⁰⁸⁾

IV. 결론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협약은 비록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

106)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07) 민사집행법 제26조.

108) 석광현, 헤이그 재판협약, 66-67면.

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¹⁰⁹⁾ 그리고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¹¹⁰⁾

2025년 10월 20일 현재 헤이그 재판협약을 가입 (서명은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헤이그 재판협약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 대다수가 유럽연합 국가인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든지 헤이그 재판협약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이 두 협약은 체약국 간에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9) 김효정, 앞의 논문, 171면.

110) 위의 논문, 171면.

참고문헌

- 김동진,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에 있어 영미법상의 소송금지명령(Anti Suit Injunction)에 대한 검토,” 『해상·보험연구』, 제4호 (2004. 3.), 112면.
- 김용진, 『국제민사소송전략-국제소송실무 가이드-(1997)』, 신영사, 162면.
- 김효정,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시의 실익과 고려사항,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9. 6.), 169-170면.
- 김효정·장지용·김성화·서용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16, 242-264면.
- 김희동,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우리 국제재판관할합의 법제의 과제”,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31호, 2014. 1., 41-66면.
- 노태악, “한국 국제재판관할법원에 있어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반소관할”, 『국제사법연구』, 제18호, 2012, 95-96면.
- 리우펑(LIU PENG, 刘蓬) · 축취영(Zhu Cui Ying, 祝翠瑛), 중국 표준필수특허(SEP) 소송에서의 소송금지명령, Legal Times, 2022.5.10.,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28>>(최종방문일: 2025. 10. 20.)).
- 박진수, “개정 중재법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활용 범위 및 실무 개선방안”, 개정중재법의 실무적 쟁점 및 운영방안, 2016년 11월 18일(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12면.
- 법무부, 『국제사법 개정 방안 연구』, 2014, 186면.
- 석광현,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11호(2005. 12.), 192-193면.
- 석광현,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의 주요 내용과 간접관할규정”,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20. 12, 5-6면.
-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제11권, 박영사, 2005. 12., 369면 이하.

이규호, “관할합의에 기초한 訴訟留止命令(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 『국제사법 연구』, 제25권 제1호 (2019. 6.), 54면.

이규호, “不法行爲關聯 請求에 있어 國際裁判管轄 -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루가노 협약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 제57권 제6호 (통권 621호), 2008, 138-179면.

이규호,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선 및 확대방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협약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1-14, 법원행정처, 2021, 515-638면.

이문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일반관할 및 유형별 국제재판관할 규정 신설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6788호)]”,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9년 3월, 25면.

정해덕, “미국해사소송에 있어서의 대한민국법상의 소멸시효와 소송중지명령,” 『한국해 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2009. 11.), 86면.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제6판, 진원사, 2025년.

Jürgen Kürth, Inländischer Rechtsschutz Gegen Verfahren vor Ausländischen Gerichten 63 (1988)(이하 “Kürth, Inländischer”)

Farm Syu Zhnyva v Gazprom International Limited, C/09/674766 / HA RK 24-584, 5 June 2025, available at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publications1/?dtid=34&cid=137>>(last visit on October 19, 2025).

Francisco Garcimartín & Geneviève Saumier, Explanatory Report of Convention of 2 July 2019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Text adopted by the Twenty-Second Session (2020), p. 48, para. 12, available at <https://assets.hcch.net/docs/a1b0b0fc-95b1-4544-935b-b842534a120f.pdf>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HCCH, Outline of HCCH 2019 Judgments Convention, available at <<https://assets.hcch.net/docs/36b240ac-8228-481d-a33b-3716baf4c656.pdf>> (last visit on October 15, 2025).

Kürth, Inländischer, at 68-70; Wolfgang Jakob Hau, Positive Kompetenzkonflikte im Internationalen Zivilprozeßrecht 126-27 (1996) (이하 “Hau, Positive Kompetenzkonflikte”); Jochen Schröder, The Right not to be sued Abroad, in Festschrift für Kegel 523, 531, 539 (1987); Dieter Jasper, Forum Shopping in England und Deutschland 126-27 (1990).

Louise Lussier, A Canadian Perspective, 24 Brook. J. Int’l L. 31, 69 (1998); John Y. Gotanda, Punitive Damages: A Comparative Analysis, 42 Colum. J. Transnat’l L. 391, 443 (2004).

Maura E. Wilson, Let Go of that Case-British Anti-Suit Injunctions against Brussels Convention Member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36, Issue 1, 212 (Spring 2003).

Mukarrum Ahmed & Paul Beaumont, “Exclusive Choice of Court Agreements: Some Issues in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Brussels I Recast Especially Anti-Suit Injunctions, Concurrent Proceedings and the Implications of BREXIT”, 13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86 (2017).

Peter Gottwald, Internationale Gerichtsstandsvereinbarungen, in Festschrift für Henckel 295, 306-07 (1995)

Peter Schlosser, Der Justizkonflikt zwischen USA und Europa 530 (1985); see also Richard Zöller & Reinhold Geimer, Internationales Zivilprozeßrecht P 1718 (2d ed. 1993)).

Peter Stone, Civil Jurisdiction and Judgments in Europe 145 (1998)

Pierfrancesco Rossi, Dutch Court Denies Exequatur of Ukrainian Judgment against Gazprom under the Hague Judgments Convention, EAPIL, 24 July 2025, available at <<https://eapil.org/2025/07/24/dutch-court-denies-exequatur-of-ukrainian-judgment-against-gazprom-under-the-hague-judgments-convention/>>(last visit on October 18, 2025).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dopted 30 Oct., 1999, by the Special Commi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vailable at

<http://www.hcch.net/e/conventions/draft36.e.html>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http://conflictoflaws.net/2017/i-thought-we-were-exclusive-some-issues-with-the-hague-convention-on-choice-of-court-brussels-ia-and-brexit/> (last visit on October 15, 2025).

<https://assets.hcch.net/docs/89be0bce-36c7-4701-af9a-1f27be046125.pdf>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cid=98> (last visit on October 1, 2025).

[국문초록]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에 대한 고찰

이규호

국제소송법상 국제협약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논의된 주제는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 합의협약」(이하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또는 ‘재판관할합의협약’)과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이하 ‘2019년 헤이그 재판협약’ 또는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내 도입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해서는 (i) 채택현황, (ii) 유보/선언/통지/수탁처와의 통신의 내용, (iii) 가입시 고려할 사항 등을 고찰한다.

영국, 싱가포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을 발효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협약은 비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만 적용되지만, 체약국은 협약 제22조의 선언에 의하여 비전속적 관할합의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 실무상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다수의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게 된다면 협약은 국제거래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헤이그 재판협약을 가입 (서명은 제외)한 아시아국가는 전무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헤이그 재판협약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가입함에 있어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 대다수가 유럽연합 국가인 것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이든지 헤이그 재판협약이든지간에 상관없이 이 두 협약은 체약국 간에 서만 작동하므로 기존의 국내 판례는 비체약국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어 이원화된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국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재판관할합의협약, 헤이그 재판협약, 전속적 관할합의, 소송유지명령,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Abstract]

A Study on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Hague Judgments Convention

Gyoocho Lee (Professor of Law,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Law)

In international litigation law,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have been the subject of ongoing discussion recently are the 「2005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or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the 2019 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2019 Hague Judgments Convention' or 'Hague Judgments Convention').

Regarding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and the Hague Judgments Convention, this Article examines (i) the status of current Contracting States, (ii) the content of reservations/declarations/notifications/communications with the depositary of the Contracting States under two Conventions, respectively, and (iii) matters to consider upon accession. or ratification of the two Conventions.

In light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in the United Kingdom, Singapore, and European Un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actively conside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Although this Convention applies only to exclusiv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s, Contracting States may extend its application to non-exclusive agreements through declarations under Article 22. A good illustrative is Switzerland.

Given the frequent use of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Convention would gain significant practical importance in international trade if adopted by a large number of countries.

As of October 20, 2025, no Asian country has acceded to or ratified the Hague Jurisdictions Convention.. Given this situation, when considering becoming the first Asian country to accede to or ratify the Hague Jurisdictions Convention, it is essential to fully consider that the majority

of Contracting States are European Union countries. Furthermor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or the Hague Judgments Convention, both agreements operate only between Contracting States. Consequently, existing domestic case law will still apply to companies or citizens of non-contracting states, potentially creating a dual system of case law. Therefore,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situations where existing domestic case law remains unchanged will still exist.

Key words: Choice of Court Convention, Hague Judgments Convention,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anti-suit injun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